#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70

발의연월일: 2022. 1. 5.

발 의 자:임호선·강선우·홍성국

오영환 · 정태호 · 변재일

김민석 • 고민정 • 임종성

박홍근 · 김정호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예방 캠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

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과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려야 함(안 제15조제1항).
-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삭제하고, 퇴학처분을 제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가하도록 함(안 제17조).
-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안 제19조제4항).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를 "제3호까지에"로한다.

제15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를 "제1항제1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를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제5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교육을"을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치"를 "조치,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로 한다.

다만, 가해학생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제2 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의 기능 등) ①・② (생 략)	의 기능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	3
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	<u>제3호까지에</u>
<u>5호에</u>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	
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	
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	
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u>실시하여야</u>	<u>실</u> 시하여야
한다.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
	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
	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	
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	
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u>&lt;삭 제&gt;</u>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③ 제1항제1호부터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	
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	
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	4

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 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 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 다.

- ⑤ ~ ⑦ (생 략)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받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①·① (생 략)
- ② 가해학생에 대한 <u>조치</u> 및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u>제3</u>		
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8		
- <u>제4호까지의</u>		
<ul><li>(9)</li></ul>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다만, 가해학생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⑪ (현행과 같음)		
① <u>조치, 제3</u>		
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_\_\_\_\_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한다.